

2021년 도

남한강 상류골지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서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목 차]

| | | |
|-----------------|-------|----|
| I. 설 계 설 명 서 | ----- | 1 |
| II. 일반과업지시서 | ----- | 4 |
| III. 특별과업지시서 | ----- | 16 |
| IV. 보 안 대 책 | ----- | 19 |
| V. 기 타 사 항 | ----- | 22 |
| VI. 예 정 공 정 표 | ----- | 24 |
| VII. 과 업 위 치 도 | ----- | 26 |
| VIII. 설 계 예 산 서 | ----- | 28 |

| | | | | | | | | | | |
|-----------------|-------------|--|-------------|--|--------|--|--------|--|--------|--|
| 2021년 월 일 설계 | 설 계 자 | | 심 사 자 | | 과 장 | | 국 장 | | 청 장 | |
|-----------------|-------------|--|-------------|--|--------|--|--------|--|--------|--|

2021년도

남한강 상류(골지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서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남한강 상류(골지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지방하천 5개 하천(골지천 등)의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범위

- 골지천 등 지방하천 5개소 L=181.5km

| 하천명 | 등급 | 위 | | | | 치 | | | | 연장 (km) | 비고 |
|-----|----|------------|----|-----|---------------|-----|----|----|-------------|---------|----|
| | | 기 점 | | | | 종 점 | | | | | |
| 골지천 | 지방 | 강원 | 태백 | 상사미 | 부정당 합류점 | 강원 | 정선 | 북평 | 한강 오대천 합류점 | 83.4 | |
| 임계천 | 지방 | 강원 | 정선 | 임계 | 도전리 도전분교 | 강원 | 정선 | 임계 | 골지천(지방) 합류점 | 14.9 | |
| 대기천 | 지방 | 강원 | 강릉 | 완산 | 대기리 늪골천 합류점 | 강원 | 강릉 | 왕산 | 송천(지방) 합류점 | 8.2 | |
| 봉산천 | 지방 | 강원 | 평창 | 진부 | 봉산리 봉두곶리천 합류점 | 강원 | 정선 | 여량 | 송천(지방) 합류점 | 13.2 | |
| 송 천 | 지방 | 경기 | 평창 | 대관령 | 황계리 상정평 합류점 | 경기 | 정선 | 여량 | 골지천(지방) 합류점 | 61.8 | |
| 계 | | 지방하천 총 5개소 | | | | | | | | 181.5 | |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20일(24개월)

5. 과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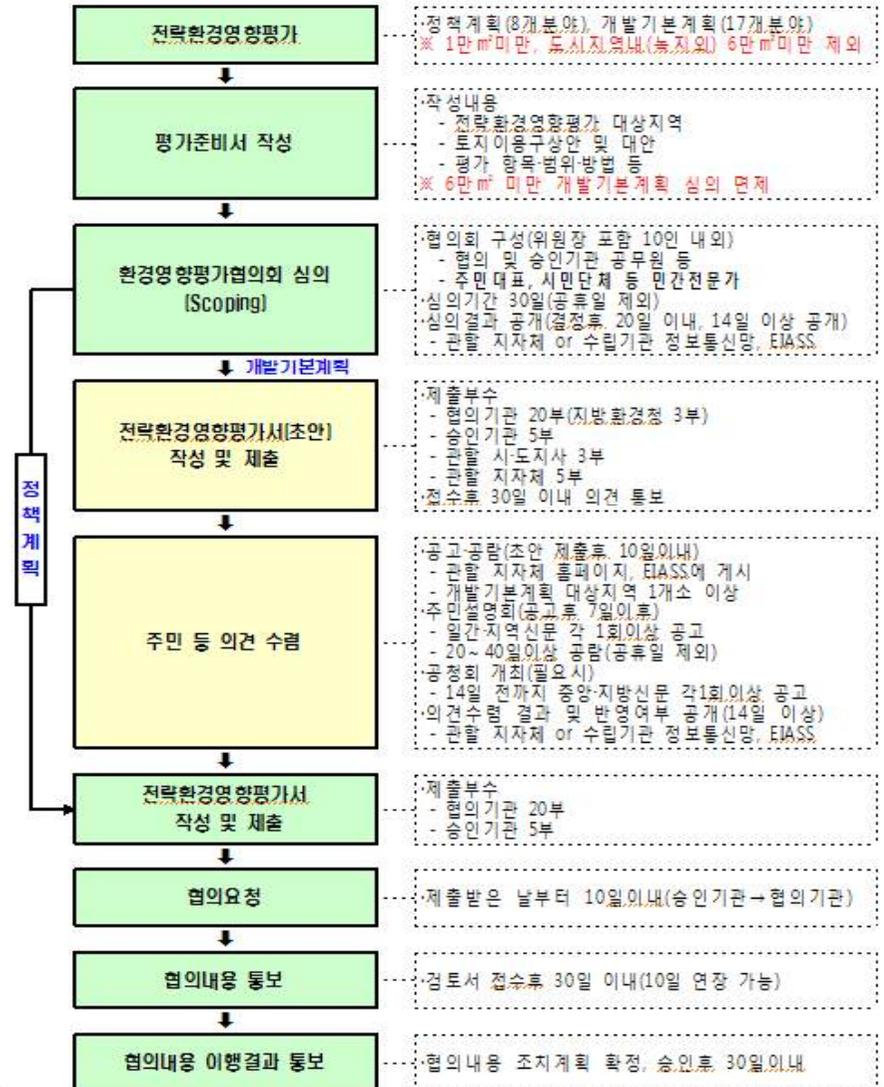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구 분 |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 협의요청시기 |
|--------------------------------|-----------------------------|--|
| 2. 개발기본계획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II. 일반과업지시서

II.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사중·후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을 실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 가. 계획의 개요
- 나. 대안 및 입지대안
-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라. 지역개황
- 마.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 바.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 입지의 타당성 검토
- 아. 종합평가 및 결론
- 자. 부록

3. 과업의 일반지침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라.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계획의 개요

-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 2)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 3) 사업의 추진경위 및 내용, 소요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사업기대효과 등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나. 대안 및 입지대안

- 1)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입지와 계획구간의 경계를 변경, 조정하는 안을 대안으로 설정한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 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라. 지역개황

- 1)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2)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3) 해당지역 환경기준
- 4)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 5)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 6)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7) 기타 계획구간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 8)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마.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민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결과를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가)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나) 주민의견 수렴결과
 -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결과 통지서 사본
 - 라) 공청회 개최시 결과 통지서 사본
- 2) 주민의견수렴 결과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개최 포함)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하여 검토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의 인적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요지 및 의견의 반영내용(미 반영시는 그 사유)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계획의 적정성 검토

- 1)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일관성을 제시하고,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 2) 대안이 절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제시한다.

사. 입지의 타당성 검토

-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검토한다.

-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수질모델링 등)
- 환경영향예측 결과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 지수를 사용하여 적절히 표시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상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는지 제시
-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 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제시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상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 육상 동·식물상 현황조사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조성, 종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조간대생물(필요시)
 -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어획대상 동물
 - 어획대상 동물의 종조성, 개체수,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조성, 개체수 등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제시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을 초래하는지 제시
- 야생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지 제시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는지 제시

3)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 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지 제시
-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지 제시
-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이 산지 및 구릉지 등의 외부 스카이라인에 영향이 있는지 제시
-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4) 수환경의 보전

-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하천수질

- 조사지점 : 하천 연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3km당 1지점)
- 조사항목 : pH, BOD, COD, DO, SS, TOC, T-N, T-P, 카드뮴, 시안, 수은, 비소, 납, 6가크롬,

ABS, 총대장균군, 수온, 유량, 클로로필a 등 19개 항목

□ 하천저질

- 조사지점 : 하천 연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하천수질 측정지점과 동일)
- 조사항목 : COD, T-N, T-P, Cd, Pb, As, Ni, Hg, Cr⁺⁶, Cu, Zn, 강열감량, 입도분석 등 13개 항목

5) 장래하천수질예측

- ① 하천수질의 예측분석을 위한 수질모형은 신뢰성있는 모형(QUAL2E 등)을 사용하되, 하천특성에 따라 유용한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QUAL2E 모형은 용존산소, 온도 등 15개 항목에 대한 관련성을 통하여 수질을 예측하는 1차원 수질예측 모형이다.
- ② 하천의 자정작용조사는 상류로부터 하류로 하천수의 유하과정 중에서 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BOD, DO 등 일주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적한다.
- ③ 자정 작용조사는 조사구간의 상류단에서 임의의 시각의 수질과 그 시각으로부터 하천수의 유하 시간만큼 경과한 후의 시각에서의 하류단 수질을 관측한다.
- ④ 수질개선대책 수립
 - 수질개선방향설정을 위해 오염원조사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분류하수관로 시설 설치 등 오염원 유입방지대책과 희석용수확보, 준설, 폭기, 접촉산화방법 등을 포함한 국내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하천수질정화공법의 비교 검토, 우선순위, 사업효과,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하천의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시행의 효과를 분석한다.

⑤ 수질관리목표설정

- 유역내 유량 및 수질조사결과, 오염원조사, 수질개선대책을 고려한 수질모델링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질관리 목표 및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한다.
- 또한 수질관리목표 설정시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서 시행한 수질예측성과 및 수질개선계획 등을 조사 활용하여야 한다. 장래수질 목표연도 등은 5년 단위로 하천수질을 예측한다.

⑥ 저감방안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 환경성검토 결과에 의하여 예측하고 평가한 항목별로 추출된 악영향의 문제점에 대하여 실시 가능하다고 인정된 환경인자, 환경상의 변화에 관계되는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그 효과, 안전, 기술비용 등을 기술하여 그 결과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있어서의 환경현상으로서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대책은 표 등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제시한다.
- 불가피한 악영향에 대해서는 제안된 행위에 포함된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에 의해서 경감되지 않는 행위의 영향에 관한 조치를 기술한다.

⑦ 종합평가 및 결론

- 현황환경의 추이에 대하여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현황환경의 추이상태의 검토를 기술한다.
- 환경변화의 장래예측에 대하여는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었을 때 환경변화의 장래예측과 평가를 기술한다.

-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예측되는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를 기술한다.

⑧ 보고서 작성

- 환경 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을 설명하기 위한 조사자료, 예측방법, 예측결과 등의 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수록한다.
- 위치·지형, 측정지점 위치(동·식물상, 수질 등)를 첨부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중에 이용된 조사자료 및 검토내용을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에 제공하여 하천기본계획의 환경분야에 활용되도록 한다.

6) 생활환경의 안전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기상 및 환경기준 설정항목)
-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제시

나) 환경 기초시설의 적정성

-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한지 제시

다)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해당 계획의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제시

7)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해당 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
- 토지이용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제시

아. 종합평가 및 결론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 유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이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자. 부록

평가작성자의 인적사항,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III. 특별 과업 지시서

III.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7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 가. 조사구간의 사·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한다.
-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당해 기본계획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협의과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 20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50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 50부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IV. 보 안 대 책

IV. 보 안 대 책

가. 일반지침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 906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부에 전량 납품(추가발행 금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불량, 파지 등 포함)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1.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임의사용·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2.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소각, 파기 조치할 것.

13.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한다.

14.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15.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단계별 보안대책

1. 보안성 검토

- 본 과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단계별 보안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단계별 보안대책

| 단계별 | 보안대책 | 비고 |
|----------|--|----|
| 용역발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책임자(정·부) 지정 ○ 수급자 대표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징구(자필서명) ○ 배부처에 맞추어 성과품 발간 | |
| 용역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감독관 수행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정기보안진단의 날에 용역업체의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필요시) - 용역업체의 과업참여자 임의교체 여부 확인 - 중간성과품 관리 철저 필요 부수만 발간 - 각종 회의 시 작성되는 자료회수 철저 확인 -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의 폐휴지 소각실시 및 자료의 보관관리 철저 이행 여부점검 - 하도급 시 보안대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육 및 확인 - 보안서약서 징구, 작업장소의 제한구역 지정운영 여부, 자료보관함 비치여부 등 확인 | |
| 성과품 발간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성과물에 대한 보안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성과물은 반드시 비밀취급인가업체에서 하도 발간 과정에 발생하는 성과물의 원지·파지 등 잉여물 회수 및 파기와 PC 등 컴퓨터기기나 USB 등 보조기억매체 저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성과물 사본번호 부여 및 과다발간 지양 - 납품수량 외 임의 추가발행 금지 - 원판 회수 및 불량·파지 등의 파기 등 | |
| 준공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품 전량 인수 확인 | |

V. 기 타 사 항

V.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3.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VI. 예정 공정표

VI. 예정공정표

| 구 분 | | 공 정 계 획 | | | | | | | | | | | |
|-----------------------------|-------------------------------|---------|---------|---------|---------|----------|----------|----------|----------|----------|----------|----------|----------|
| | | 2 개월 | 4 개월 | 6 개월 | 8 개월 | 10 개월 | 12 개월 | 14 개월 | 16 개월 | 18 개월 | 20 개월 | 22 개월 | 24 개월 |
| 1. 과업계획 수립 (사업개요 파악) | | | | | | | | | | | | | |
| 2. 자료수집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 파악) | | | | | | | | | | | | | |
| 전략 환경 영향 평가 | 3.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 | | | | | | | | | | | | |
| | 4. 기초 현황조사 | | | | | | | | | | | | |
| | ● 환경질측정 | | | | | | | | | | | | |
| | ● 동식물상조사 | | | | | | | | | | | | |
| | 4. 초안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5.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 | | | | | | | | | | | |
| | 6. 본평가서 작성 | | | | | | | | | | | | |
| | 7.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Ⅶ. 과업 위치도

< 과 업 위 치 도 >



VIII. 설 계 예 산 서

| | | | | | |
|------------------------|-------|-------|-----|-----|-----|
| 설 계 년 월 일 2021. . . | 설 계 자 | 심 사 자 | 과 장 | 국 장 | 청 장 |
| | | | | | |

2021년도

**남한강 상류(골지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설 계 예 산 서**

▣ 용역 개요

| 구 분 | 전 체 |
|------|---------|
| 하천연장 | 181.5km |

▣ 용역 금액

| 구 분 | 전 체 |
|---------|---------------|
| 도급예정액 | 625,000,000 원 |
| 공 급 가 액 | 568,181,818 원 |
| 부가가치세 | 56,818,182 원 |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